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3. 16 선고 2021가단394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이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## 주 문

1. [별지 2]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지분에 관하여,  
가.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. 1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 
나. 피고는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. 1. 31. 접수 제5864호로 마친  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[별지 1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